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비용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45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비용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2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11일 강득구위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인 실업이나 고용불안으로부터의 안전망이 부실해 질 수 있음.

이에 국가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비용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5조 제1항 후단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5조(국고의 부담) ① ----- ----- -----. <u>이 경우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사업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그 휴가·휴직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¹⁾이 있음.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의 지출액(계획)은 2024년에 2조 4,968억원 수준이고, 정부는 동 사업 지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였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4년 기준 4,000억원이고, 2025년도에는 5,500억원이 편성되었음.

[표]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 및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실업급여 계정지출 (A)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B)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비율 (B/A)	모성보호육아지원		일반회계 전입금 (C)	전입금 비율 (C/B)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주1)}	육아휴직 급여 등 ^{주2)}		
2001	8,821	0.07	-	0.02	0.05	150	2142.9
2002	9,130	257	2.8	226	31	150	58.4
2003	11,375	441	3.9	335	106	-	-
2004	15,844	624	3.9	416	208	20	3.2
2005	19,054	743	3.9	460	282	20	2.7
2006	22,842	1,254	5.5	909	345	100	8.0
2007	27,132	1,934	7.1	1,324	610	100	5.2
2008	32,290	2,651	8.2	1,666	984	100	3.8
2009	45,294	3,182	7.0	1,785	1,397	100	3.1
2010	41,585	3,707	8.9	1,926	1,781	100	2.7

1) (고용보험기금, 1345-358)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2011	41,876	5,092	12.2	2,329	2,763	100	2.0
2012	43,860	6,004	13.7	2,419	3,585	150	2.5
2013	46,057	6,569	14.3	2,351	4,218	250	3.8
2014	49,639	7,401	14.9	2,368	5,032	350	4.7
2015	54,978	8,859	16.1	2,590	6,269	700	7.9
2016	58,557	8,840	15.1	2,480	6,360	700	7.9
2017	62,858	9,356	14.9	2,434	6,922	900	9.6
2018	79,157	11,041	13.9	2,493	8,547	900	8.2
2019	98,558	13,500	15.1	2,700	10,800	1,400	10.4
2020	138,860	15,614	11.2	2,942	12,672	1,800	11.5
2021	144,138	16,850	11.7	2,978	13,872	2,200	13.1
2022	141,325	20,772	14.7	3,126	17,646	3,000	14.4
2023	143,307	22,687	15.8	3,342	19,344	3,000	13.2
2024	141,712	24,968	17.6	3,609	21,359	4,000	16.0
2025	157,775	40,225	25.5	3,860	36,365	5,500	13.7

* 주1)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는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전후휴가급여등’도 포함되어 있음)

주2)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 기준 13.7%에 불과하고, 동 사업의 재원이 되는 실업급여계정은 경기 침체 및 고용 둔화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²⁾, 출산전후급여등³⁾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2)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에 따른 급여를 의미함(난임치료휴가 급여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일반회계의 부담비율을 명시하여 고용 불안정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증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령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의 지출액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기준 4조 225억원이고, 개정안에 따르면 동 지출액의 30%인 1조 2,06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2025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5,500억원 수준이므로, 6,56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함.

따라서 재정당국과 저출생 극복 등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과 추가재정소요에 따른 국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8

3)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함